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1년 2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 방안
- 자산손상관련 추가지침

세무 및 법률정보

-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

■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

[출처: 금융감독원, 2020.12.14]

개요

1. 개요

□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결산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투명한 회계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기업과 감사인**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

◦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독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

2. 그 동안의 노력

□ **코로나19**의 본격화(2월) 이후 **감독당국**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리스 회계기준 개정**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 및 감사의 부담**을 완화

◦ 또한,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으로 **감독당국**의 입장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의 주요 대응내용 >

□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허용 및 행정제재 면제**(‘20.3월)

* 해외 종속회사 등의 **결산 및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감사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금감원** 심사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출기한 연장 및 행정제재를 면제[†]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 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 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를 결정하고,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 허용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안내**(‘20.4월)

*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안내('20.4월)
 - *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K-IFRS 제1116호(리스) 회계기준 개정('20.7월)
 - * 코로나19로 인한 리스료 할인·면제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리스부채의 재계산 없이 할인·면제 금액을 리스부채에서 단순 차감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을 허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운영 관련 실태조사 실시('20.9월)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기업들의 준비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
 - † 개별 :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2조원('20년), 1천억원~5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연결 : 2조원 이상('22년) → 5천억원~2조원('23년) → 5천억원 미만('24년)

- 종속기업 범위 개정안 적용 유예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추진('20.11월)
 - * '20년부터 소규모 비외감기업도 예외없이 종속기업에 편입되도록 연결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획득이 어려움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 추진
 - 감사인 선임·지정 등 관련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 개최('20.4월, 8월, 11월)
 - * 유한회사 등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설명회 개최('20.4 월),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제고 및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20.8 월), K-IFRS 제·개정 내용을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설명회 개최('20.11 월)

코로나19관련
향후 감독방안

3. 코로나19관련 향후 감독방안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마련하고, 애로·건의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수렴 예정

- (회계감사기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짐
 - ◊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감사현장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한공회와 함께 안내할 예정(12월)

[참고]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주요내용

- 감사인의 격리조치 등으로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등의 대체적 절차를 설명
- 감사인이 국외소재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등 대체적 절차를 설명
-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설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등 제시

- 외부감사법 개정('18.11.1.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하여 **감독방향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 존재**
- ⇨ 초기 **제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시 예정**(’21.1분기)
 - **코로나 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우려*** 존재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을 중요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어, 해외자회사 평가 등의 결산 수정사항을 기계적으로 중요 취약점으로 분류할 우려

- ⇨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FAQ)**를 제공할 예정(12월)

□ (외부감사제도)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의 탄력적 운용

- 코로나19 장기화시 결산·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인한 **감사보고서 등의 기한내 미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지연 발생 우려**
- ⇨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등을 운영할 예정**

□ (회계현안 설명회 등) 감사현장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 회계법인 등과 회계감독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코로나 19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할 필요**
- ⇨ 「2020년도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에 반영할 예정**
- * 회계현안설명회(12.23일, 감사인 대상으로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기말감사 유의사항을 안내), 지방순회설명회(’21.1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임·지정제도 관련 지방순회 설명회 개최) 등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한공회, 회계기준원 등)과 협력하여 기업 및 감사인의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실무가이드 등은 '20년 결산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기(연내)에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예정
 - 기업 및 감사인도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 19로 영향 받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

■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

[출처: 금융감독원, 2021.2.8]

- 외부감사인인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회계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시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 ▷ 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21.2.8)하였으며,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21.1.11.)

-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토대로 최선의 추정을 하였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 회계오류라 판단하지 않음
- ①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가 아님
- ② 할인을 추정시 비합리적 시장변동을 제거하기 위해 할인을 조정범위 제시

□ 그러나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산손상 기준서 및 감독지침 적용에 일부 애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상장협, 코스닥협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여전히 존재

현장의 목소리

① (감사인인 보수적 접근) 기업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지침과 달리 보수적 견해만을 제시하여 회사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음

* 예) 외부수치자료(국제산업협회 수치자료) 인용 등

② (과거 관행의 적용) 감독당국의 지침과는 별개로 감사인이 과거 자산손상 기준을 적용한 잣대로 외부감사 수행

㉔ (추정근거 제시 어려움) 감사인은 기업이 추정한 사업계획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나, 기업은 현실적으로 코로나19의 회복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전망자료 입수도 쉽지 않아 감사인의 요구자료 제시에 한계 존재

* 예) 코로나19 이후 매출 등의 회복가능성 및 회복시기 추정

➔ 이에, 감독당국은 기업과 감사인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산손상 지침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조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후 추가사항을 안내합니다.

2. 후속지침안의 주요내용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 등(회계추정 포함)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회계감사기준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16)

□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감독지침 내용을 향후 회계심사·감리에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 코로나19의 종결 및 회복시기 등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 시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금번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현장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계획) 동 지침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입니다.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 위임 사항 등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21. 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국기칙 19의 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연 1.8%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에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하향 조정 ○ 연 1.8% → 1.2%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에금 평균 수신금리 (연%, 한국은행) : ('16) 1.56 ('17) 1.66 ('18) 2.02 ('19) 1.85 ('20) 1.16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에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 (소득칙 §5의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도 주택수가 가산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수 판단기준 명확화 ① (좌 등) -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공동소유 주택의 전체 임대소득 수입금액 (전세보증금등에 따른 수입은 제외) × 지분율

<p>②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공동소유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p>	<p>② (좌 동)</p>
---	----------------

<개정이유>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수 판단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요건 구체화 (소득칙 §9 의 2 신설, §15 의 2 삭제)

< 시행령 개정내용(§17 의 4, §38)>

- 소액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사택제공의 이익을 근로소득 과세 제외 대상에서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로 이관하여 규정
- 소액주주의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택의 범위(현행 §15 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input type="checkbox"/> 사택제공이익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액주주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택의 범위(§9 의 2 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input type="checkbox"/> 소액주주의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상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 미만 보유

<개정이유>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 되는 소액주주인 임원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57, 법인칙 §6)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p> <p>*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p> <p>**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p> <p>○ 연 1.8%</p>	<p><input type="checkbox"/> 이자율 하향 조정</p> <p>○ 연 1.8% → 1.2%</p>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1.1.1. 이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 분은 종전 규정 적용

5.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금액 계산(소득칙 §13)

< 시행령 개정내용(§26 의 2)>

<p><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의 소득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집합투자기구) ①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②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외: 배당소득 ○ (비적격·국외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 ㉠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소득 ㉡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 	<p><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보수·수수료의 범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되고 남은 보수·수수료

-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에서도 보수·수수료 공제 허용
-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3.1.1. 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6.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소득칙 §69 의 2 등)

< 시행령 개정내용(§150 의 6 등)>

- 거주자*의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
- *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외 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범위 ① 주식등 및 채권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 국외에 있는 부동산주식등 제외 ② 해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개정이유> 국외 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범위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방법(소득칙 §69 의 5)

< 시행령 개정내용(§150 의 9)>

-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합산
- 감면비율의 계산 등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 발생 시 감면을 또는 공제율만큼 줄여서 인정 <input type="checkbox"/> 세액감면: 감면을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공제율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 주주의 범위 (소득칙 §69 의 8)

< 시행령 개정내용(§150 의 14)>

<input type="checkbox"/>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 주식등 <input type="checkbox"/>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input type="checkbox"/>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K-OTC 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등 <input type="checkbox"/>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input type="checkbox"/> (상장주식)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input type="checkbox"/> (K-OTC 거래주식)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주주: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 *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 실제취득가액) <div style="text-align: center;">< 대주주 기준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구분</th> <th style="width: 33%;">지분율</th> <th style="width: 33%;">종목별 보유액</th> </tr> </thead> <tbody> <tr> <td>코스피</td> <td>1% 이상</td> <td>10억원</td> </tr> <tr> <td>코스닥</td> <td>2% 이상</td> <td>이상</td> </tr> <tr> <td>코넥스·비상장</td> <td>4%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코스닥	2% 이상	이상	코넥스·비상장	4% 이상	
구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코스닥	2% 이상	이상											
코넥스·비상장	4% 이상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혼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적용기한 특례사유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보완 (소득칙 §72③5)

< 시행령 개정내용(§155⑩)>

- 1 조합원입주권과 1 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 추가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 경매 신청사실 입증 서류 ○ 현금청산금지급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제출 서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 (좌 등) ○ (좌 등) ○ 수용재결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사유 규정 (법인칙 §10 의 5)

< 시행령 개정내용(§19 의 2)>

- 물품의 수출·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 시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 ①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이 확인 ② 분쟁 발생으로 중재기관·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 ③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이 확인 ※ 「舊외국환거래규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일

<개정이유> 해외채권의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외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11.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관련 세부규정(법인칙 §42 의 5)

< 시행령 개정내용(§88)>

-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간 내부 용역 제공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제외되는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의 요건 ①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② 해당 용역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일 것

<개정이유> 연결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2.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중부칙 §4 의 4)

< 시행령 개정내용(중부령§4 의 3②)>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신고 시제출 필요 서류 ❶ 일반세율 적용 신고서 ❷ 해당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

13.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신청(중부칙 §4 의 5)

< 시행령 개정내용(중부령§5 의 2④)>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변경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시 신청 서식 신설 <input type="checkbox"/> 특례신청을 한 다음연도부터 변경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한 사항 ❶ 주택의 소유자 또는 지분을 ❷ 공동명의 1주택자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및 변경신청 사유 규정

14.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부가칙 §71)

< 시행령 개정내용(§109②)>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①상품중개업, ②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③건설업, ④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추가

○ 다만, 위 ③, ④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 제조업 중 간이과세 적용세부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업 ○ 공급 재화의 50% 이상을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제조업 중 간이과세 적용세부업종 위임 규정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p>□ 건설업 중 간이과세 적용세부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배, 실내 장식 및내장 목공사업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p>□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복사업 ○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개정이유> 간이과세 배제업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B2C)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 (조특칙 §9)

< 시행령 개정내용(§1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경력요건을 강화*하되, 취업기관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 연구원 → 자연계 분야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 +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국외 연구 경험 판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시설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 ○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 주식 30% 이상 외국인 소유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input type="checkbox"/> 경력요건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 소지 분야)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p>*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생명과학) 분자생명, 기초생명, 기반생명 등 (의약학) 기초·응용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등 (공학) 기계, 건설/교통, 재료, 화공 등 (ICT-융합연구) 정보기술융합, 바이오·의료융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해외에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증명서 제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p>* 대학·연구기관 명칭·주소, 근무기간, 근무부서 등</p>

<개정이유>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의 경력요건 구체화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조특칙 §12)

< 시행령 개정내용(§24 ①)>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토지, 건물, 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건물, 구축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자산은 공제 허용
- ①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토지,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② 업종별 특성을 감안 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 도·소매업, 물류산업 :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인사, 회계, 문서작성, 기본운영체제 등 일반사무·지원용 제외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서면법령법인-5074, 2020.12.18)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2020사업연도에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정관상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1억원)보다 더 큰 금액(예: 5억원)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일시 불입할 예정임

(질의)

-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정관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큰 금액을 일시 불입하는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에 있어 정관에 따른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제과-51, 2021.01.26)

(사실관계)

- 다국적 기업인 A법인은 1987년에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17.6.15. 단독 현금출자로 내국법인인 갑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의 발행주식 3,400,000주 전부를 인수하였음.

○ A법인은 2018.1.1. 갑법인에게 한국지사에서 영위하던 보험업과 관련된 계약,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고 갑법인 주식 52,105,798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는바

- A법인 및 한국지사와 갑법인 사이에 체결된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면 A법인이 현물출자인(Transferor)으로 일방 당사자가 되고 갑법인이 피출자인(Transferee)의 지위로 상대방이 되며

- A법인 한국지사는 본사를 위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후 A법인은 2018.3.21. 갑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4,824,134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으며.

- A법인 한국지사는 2018.3.27. 및 2018.12.31.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본사에 이전하여 갑법인은 현재까지 A법인의 100% 자회사로서 생명보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바, 갑법인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음

<갑법인 주주변동현황> (단위 : 주)

변동일자	합계	A법인	A법인 한국지사	비고
17.6.15. ~ 18.1.1.	3,400,000	3,400,000	0	
18.1.1.	55,505,798	3,400,000	52,105,798	A법인 한국지사 현물출자
18.3.21.	60,328,932	3,400,000	56,928,932	유상증자
18.3.27.	60,328,932	55,505,798	4,823,134	주식 분점 이관
18.12.31.	60,328,932	60,328,932	0	주식 분점 이관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영업일체를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고 수령한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해당되었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총당금 잔액 전부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